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385

발의연월일: 2021. 4. 9.

발 의 자: 강득구·김민철·김승원

박성준 • 박완주 • 안규백

양경숙・양정숙・정청래

조오섭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게 하는 등 맹견 소유자등에게 맹견에 대한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 맹견 출입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목줄·입마개 등을 하지 않은 맹견이 자주 목격되고 있고, 이러한 맹견이 사람이나 소형견 등을 공격하여 부상 또는 사망에 이르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또한 상황대처가 어려울 수 있는 학생, 장애인과 노약자 등을 위해, 어린이와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에도 맹견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맹견을 소유·사육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에 중학교 및 고등학교,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하며, 소유자등

이 맹견에게 목줄·입마개 등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상향함으로써 맹견에 대한 소유자등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여 인명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제3호, 제13조의3제4호 및 제5호 신설, 제13조의4 신설, 제46조제3항제1호 신설 및 제47조제1항).

법률 제 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3호 중 "초등학교"를 "초등학교,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중학교,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고등학교"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제1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3조의4(맹견의 소유 등 허가) ① 맹견을 소유·사육하려는 자는 농 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 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맹견에 관한 교육 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46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맹견을 소유·사육 한 자 제4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제2 호의3을 삭제한다.

① 제13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안전장치 및 이동장치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맹견의 소유 등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맹견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3조의3(맹견의 출입금지 등) | 제13조의3(맹견의 출입금지 등) - |
|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 | |
|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 |
| 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 | |
| 록 하여야 한다. | |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3. 「초·중등교육법」 제38조에 | 3 |
| 따른 <u>초등학교</u> 및 같은 법 제 | <u>초등학교, 같은 법 제41</u> |
| 55조에 따른 특수학교 | 조에 따른 중학교, 같은 법 |
| | 제45조에 따른 고등학교 |
| <u><신 설></u> | 4.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 |
| | 른 노인복지시설 |
| <u><신 설></u> |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 |
| | 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
| <u>4.</u> (생 략) | <u>6.</u> (현행 제4호와 같음) |
| <u><신 설></u> | 제13조의4(맹견의 소유 등 허가) |
| | ① 맹견을 소유·사육하려는 자 |
| | 는 농림축산식품부렁으로 정하 |
| | 는 바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 |
| | 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
| | 받아야 한다. |
| |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고 |
| | 자 하는 자는 맹견에 관한 교 |

제46조(벌칙) ①・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1. ~ 4. (생 략)

④·⑤ (생 략) 제47조(과태료) <신 설>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2의2. (생 략)
- 2의3.
 제13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월령이 3개월 이상

| 육 | 이수 등 대통령령으로 | 정하 |
|---|--------------|----|
| 는 |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

| 제46조(벌칙) | 1 • 2 | (현행과 | 같 |
|------------|-------|------|---|
| <u>o</u>) | | | |

| (| 3) | - | | _ | | _ | | _ | _ | _ | _ | _ | _ | _ | _ | _ |
|---|----|---|------|-------|-------|---|-------|---|-------|---|---|---|---|---|---|---|
| - | | | | _ | _ | | - | | _ | _ | _ | _ | _ | _ | _ | _ |
| | | | | | | | | | | | | | | | | |

- 1.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허가 를 받지 아니하고 맹견을 소 유·사육한 자
- 2. ~ 5. (현행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 ④·⑤ (현행과 같음)

제47조(과태료) ① 제13조의2제1 항제2호를 위반하여 월령이 3 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안전장치 및 이동장 치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등에 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u>2</u> | | | | | _ |
|----------|------|------|------|------|-------|
| | | | | | _ |
| | | | | | |

1. ~ 2의2. (현행과 같음) <u><</u>삭 제> 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때 안전장치 및 이동장치를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2의4. ~ 5. (생 략) ② ~ <u>④</u> (생 략) 2의4. ~ 5.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 항까지와 같음)